

『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」는 민간 참여의 근거 부족으로 '노사정협의회'를 '노사민정협의회'로 확대·개편하여 지역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기구로서의 협의체 역할을 정립하기 위함.
- 근로자, 사용자, 주민 및 구미시 간 상생을 통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코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노사민정의 책무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 -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 안정에 기여
-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(안 제3조, 제4조)
 -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
 -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
 -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
-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(안 제6조, 제7조)
- 사무국의 설치 및 기능 (안 제9조)
-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,
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로 “구미시노사정협의회”에 주민을 참여하도록 추가하여, “구미시노사민정협의회”로 확대개편하므로 노사 관계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안정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,
- 주요 개정내용으로는,
 - “구미시노사정협의회”의 명칭을 주민을 추가로 포함시켜 “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”로 수정하였으며,
 - 협의회 등의 회의준비, 진행, 운영예산 수립 등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, 실무협의회의 회의와, 기능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.
-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